

[광진구 공고 제 2019 - 227호]

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(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포함)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 규정에 따라
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
공고합니다.

2019. 10.

광진구청장



1. 위탁대상 :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(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포함)

○ 소재지 : [제1센터] 광진구 능동로30길 23, 새마을회관 2층

[제2센터]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, 자양공공힐링센터 5층

2.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

3. 위탁사무

가.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아이돌봄지원 관련 사업(지정사무)

다. 기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

4. 운영재원 : 보조금 및 법인 기부금 등

가. 건강가정사업 : 320,626천원(2019년 기준, 예산은 증감될 수 있음)

나. 다문화가족사업 : 453,216천원(2019년 기준, 예산은 증감될 수 있음)

다. 아이돌봄사업 : 1,585,657천원(2019년 기준, 예산은 증감될 수 있음)

5. 신청자격

가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

- 1)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
- 2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4)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- 5)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

나. 센터장(예정자)의 자격요건

- 1)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(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)
- 2)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(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)
- 3)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

- * 관련사업 : 가족관련 업무(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지원, 가족역량강화, 사회복지,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) 종사 경력
- * 관련학과 :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노년학, 보육학, 교육학, 상담학, 다문화학 등

6. 신청제외 대상

가.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

나. 주사업장과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거나, 운영체 명의로만 가지고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·단체

다.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법인·단체

라.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법인

7. 위탁운영 조건

- 가. 수탁운영자는 건강가정기본법, 다문화가족지원법, 센터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함.
- 나. 수탁자는 통합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,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해야 함
- 다. 약정한 자체부담금은 위·수탁협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약정금을 출연하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
- 라. 법인이나 학교의 경우 정관에 가정(사회)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
- 마.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·수탁약정서에 의함

8. 공고 및 신청접수

가. 공고기간 : **2019. 10. 29.(화) ~ 2019. 11. 10.(일) [13일간]**

※ 신청 법인·단체가 1개소일 경우 재공고 (1회에 한함)

나. 접수기간 : **2019. 11. 11.(월) ~ 2019. 11. 15.(금) [5일간]**

다. 접수장소 : 광진구청 가정복지과(민원복지동 3층)

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(09:00~18:00) 방문접수
(토, 일,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)

마. 신청서식 :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

바. 제출서류

구분	서 류 항 목
구비 서류	① 광진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신청서 1부 【서식1】 ② 법인 일반현황(조직 및 운영현황) 【서식2】 · 예금증명서 등 증빙서류(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) · 타시도 소재 부동산은 공시지가, 기준시가, 과표 등 증빙자료 · 부동산(등기부 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③ 법인(단체)의 등기부등본 1부

	<p>④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 : 정관 및 법인허가증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, 법인인감증명서 1부 · 단체 : 단체등록증 및 정관 회칙 규약 사본 각 1부 · 학교 : 등록증 사본, 학교의 회칙 또는 규약, 인감증명서 각 1부 <p>⑤ 사업계획서(수입·지출 계획서 포함) 1부 【서식3】</p> <p>⑥ 자부담금(출연금) 승낙서 1부 【서식4】</p> <p>⑦ 법인대표자 및 센터장(예정자)의 이력서(경력증명 포함) 및 자격 관련 증명서 각 1부</p> <p>⑧ 대표자 사용인감계 【서식5】</p> <p>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</p> <p>⑩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류 【서식6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·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· 가족돌봄 사업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·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<p>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하고 증빙자료 포함 (불가피하게 이전일로 제출 시 사유서 첨부)</p>
<p>수량 및 규격</p>	<p>① 제출서류는 목차와 함께 ①~⑩ 순서대로 1권의 책자(규격 A4)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출수량 : 11부(원본1부, 사본10부) <p>②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, 좌철 제본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</p> <p>③ PPT(요약본) : 센터 운영계획 설명(10분 이내) 자료 e-mail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출처 : tinus77@gwangjin.go.kr

8. 선정기준 및 심의

가. 수탁기관의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운영계획의 적정성, 법인 대표 및 센터장(예정자) 자격 등 종합평가

나.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수탁기관 심의 선정

9.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

가. 신청자는 심의일(추후통보)에 출석하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(PPT 10분 이내)과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

나. 평가기준에 의한 심의결과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위탁기관으로 결정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서 득점을 많이 한 법인(단체)로 결정

- 다. 단독 신청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,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적격여부 심사하여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
- 라. 다수가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에서 신청법인(단체) 전체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재공고
- 마. 선정결과 발표 : 개별통지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

10. 문의 및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.
- 나. 위탁관련 사전 설명회는 없으며, 신청하는 법인·단체는 모집공고, 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 하여야 하며, 미숙지 또는 미확인,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(단체)에게 있습니다.
- 다.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.
- 라.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릅니다.
- 마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받은 경우,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차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.
- 바.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.
- 사.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아.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자. 수탁체로 선정된 법인(단체)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여성다문화팀(☎02-450-7079)로 문의 바라며, 이견이 있을 시 광진구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